

◇ 招請講演 ◇

韓國과 日本 酒類產業의 類似點과 差異點



井手 敏博

<日本 酒類流通活性化研究會·代表>

「본고는 본회가 1993.8.12. 井手敏博(일본주류유통활성화연구회·대표)를 초청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강연한 내용을 발췌 게재한 것임」
— 편집자 주 —

■ 目 次 ■

1. 서론
2. 국제화－선진제국형 세제의 사정
3. 자유화－면허제도의 개방
4. 규제완화후의 주류산업

1. 서론

본 테마는 주로 일본에서의 현실상황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주류산업을 둘러싼 환경조건의 차이에 대해 서술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전부터 한국의 酒類事情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取材하였고, 일본의 신문이나 잡지 등에 발표를 해왔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것은 단순히 한국이나 미국의 酒類事情을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들 나라의 현실상황을 통해서 일본의 술을 생각해보고자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한국의 酒類事情에 밝은 것은 아닙니다. 또 본인이 한국의 주류산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어쩌면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해나 사실오인도 충분히 예견되므로 어디까지나 「외국인의 눈에 비친 것」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2. 국제화－선진제국형 세제의 사정

인류의 가장 오래된 Business는 매춘이라고 합니다만 농경의 시작과 더불어 술의 탄생이 있었으므로 주류 Business의 기원도 상당히 오래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되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우쭐 댈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산업으로서 현대에 있어서도 힘차게 성장하는 것을 유지할 수가 있는가」하는 것입니다.

그 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귀국에 있어서나 일본에 있어서나 마찬가지로 직면하고 있는 국제화, 자유화의 추세 때문인 것입니다. 공통의 문제이면서도 양국이 각각 다른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1986년에 EC는 GATT에 「일본의 주세제도는 불공정하다」고 제소를 하였고, 다국간협의(GATT PANEL) 및 이사회는 이 제소를 認容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스키류에 대한 고율의 종가세 제도는 代替可能商品인 소주에 대한 저율의 종량세 제도와 비교해서 불공정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EC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하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대장성의 담당관과 함께 「주류에는 각각 그 나라 고유의 역사가 있다. 위스키와 소주를 같은 Category로 생각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웃어 넘겼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주는 위스키의 代替可能商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무런 선입관 없이 주세법을 반복해 읽어보니 과연 소주란 증류주 一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예외규정이 혹은 위스키이기도 하고 혹은 Spirits이기도 한 것입니다.

일본에 있어서 술의 역사를 보면 양조주는 청주나 탁주이고, 증류주는 소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明治時代의 근대화와 더불어 서양제국으로부터 맥주가 들어오고 위스키나 브랜디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국 주류를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은 一部 上流階級이고 潤澤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한편 서민대중의 술에 세금을 무턱대고 부과할 수는 없고 또 전통적인 국내산업은 보호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큰 격차가 있는 세율을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정치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分類差等級別課稅」, 이 課稅思想은 「좋은 술을 먹는 사람은 높은 세금을 내라」하는 것입니다. 좋은 술인지 어떤지는 정부가 결정을 합니다. 종류별 세율에 의해 소비량도 규정되어 집니다. 말하자면 「開發途上國型 稅制」인 것입니다. 일본도 1989년의 주세법 개정까지는 그래왔던 것처럼 지금도 아

직 기본적으로는 변함이 없습니다.

소주와 위스키와의 최대 격차가 1:25에서 1:5로 바뀐 것 뿐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말하는 「선진국형 세제」란 어떤 것일까요. 그 내용은 주류구분의 간소화와 알콜도수에 따른 종량세를 뜻합니다.

구분은 양조주, 증류주, 혼성주, 맥주의 4가지 뿐으로서 종가세는 없습니다.

술의 우열은 소비자의 미각에 의해 판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88년에 일본은 종가세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EC는 「소주와의 격차」에 대한 압력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7월의 G7 SUMMIT에서는 모든 주류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본의 Wine에 대한 세율은 G7중에서 최저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들의 형편에 맞는 편의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주세법이 선진제국형 세제로 전환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때까지 소주는 품질을 향상시키고 Cost Down을 꾀하고 대등의 증류주로서 위스키나 브랜디, 스피리츠 등과 경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3. 자유화－면허제도의 개방

국제화와 더불어 외국으로부터의 압력이 강화되어 이번에는 면허제도가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주세는 청일, 러일전쟁에 있어서 국가재정의 기반이 되었고, 1898년 이후에는 주류면허가 없는 술의 제조는 금지 되었습니다. 중일전쟁의 시작과 더불어 술에 대한 세금이 크게 올랐고 이에 대한 댓가로 1938년부터 판매면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戰時統制經濟는 술에 있어서 1964년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64년에 주류의 가격은 “표면적으로는” 자유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근 5

년전 무렵부터 급격히 진전된, 주류의 디스카운트 스토어(술DS)가 생기기 까지는 업계 Cartel 가격이 존재해서 술의 소매가격은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 최대의 원인은 전국 14만의 주류소매점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산, 도매, 소매는 「生販三層」이라고 불리우는 완고한 Guild를 형성하여 온 것입니다.

그것이 그 기능을 정지하게 된 것은 직접적으로는 술 DS의 진출 탓입니다만 간접적으로는 미국의 압력에 의한 점도 있습니다.

美·日構造協議(SII – Structural Impediments Initiative)에서 지적받은 결과, 정부는 바닥 면적 10,000m² 이상의 대형 점포에는 무조건 면허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또 89년 가을부터는 소매점 면허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면허제도의 존재 이유가 되는 「수요조절상의 요건」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가 자유화의 종점이 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류업계가 「특별한 업계」일 수는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판매면허제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의 소매점으로부터 「한국처럼 된다면 끝장이다」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매면허가 자유화된 나라의 상황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공포의 내일」을 느끼게 하는 것이겠지요.

그들은 면허제도에만 의존하여 생활하여 온 것입니다. 한국의 소매점은 존립기반이 전혀 다르므로 이것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도매의 기능 차이도 현저합니다. 일본의 도매는 술도매에서 출발을 하였지만 현재는 오히려 종합식 품 도매업으로 업태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또, 1차 도매업, 2차 도매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인 차이는 없고 기업 역량의 차이인 것입니다. 최근에는 도매에서 술 DS로 전환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류산업 전체의 입장으로서는 「도매 불요론」이 유력해지고 있으므로 도매는 「金融, 物流」의 다음으로 「정보기능」을 어떻게 개발하는가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귀국에서의 제조면허의 자유화 발표(1991)에는 다소 놀랐습니다만 좀처럼 매끄럽게 진행되지는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기득권익의 옹호라고 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일이든지 「혁명적」으로 바꾸어서는 안됩니다. Alcohol에 물을 가할 때 급격히 행하게 되면 열이 발생합니다. 일은 천천히 진행사켜야 할 것입니다.

4. 규제완화후의 주류산업

귀국에 있어서나 일본에 있어서나 주류산업에 대한 「통제」는 최근까지도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행정규제가 심했던 것은 아니고 행정을 업계가 이용함으로써 「城 안에서의 평화」를 누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소비자 무시라고 한다면 그럴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일본의 관료는 동요하고 있습니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절대적 진리」가 없어진 것이 그 원인입니다.

明治時代의 관료들의 主義인 「富國強兵」은 戰後 「경제부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어느것이든 「국내 산업의 보호 육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한 진리가 없어졌으므로 자신을 상실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반면에 귀국의 관료들은 아직 해야할 일도 많고 자신을 잊지도 않은 듯 합니다.

하지만 규제의 방식이 큰 망을 투망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화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좋고 나쁨을 떠나서, 아래가지고는 행정 Cost가 많이 걸립니다. 규제가 더욱 필요하다면 업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직접통치 보다는 간접통치가 더 좋다고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다.

규제완화(Deregulation)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 「생산자의 자유」도 중요합니다.

외국의 상품과 소비자 쟁탈전을 벌이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본의 자유와 더불어 기술의 자유와 홍보의 자유를 손에 쥐고 있지 않으면 않됩니다.

귀국의 술의 역사를 보면 이조시대에는 많은 종류의 家釀酒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일본의 조선 통치에 의해 소멸되었다고 하면 술을 사

랑하는 한 사람으로써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독교 윤리인 「술과 죄」에 대해서 유교는 「술의 덕」을 말합니다. 혹은 서양의 「麥芽의 문화」에 대해 아시아의 「麴의 문화」를 대치시킬 수 있습니다. 이 문화적 배경의 차이는 다가오는 세기에 있어서 술의 Asia에로의 회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국과 일본의 술이 한편으론 경쟁하며 또 한편으론 문화교류를 해가면서 함께 발전해 가기를 마음속으로부터 기원합니다.

天地之氣，暖則生，寒則殺。故性氣清冷者，受享亦涼薄。唯和氣熱心之人，其福亦厚，其澤亦長。

천지(天地)의 기운이 따뜻하면 만물(萬物)을 자라게 하고, 추우면 만물을 죽게 한다. 그러므로, 성질이 차가운 사람은 복받음 또한 박(薄)한 법이다. 오직 마음이 온화하고 따뜻한 사람이라야 복받음 또한 두텁고 은택(恩澤) 또한 오래간다.